

의안번호	제 121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1월 일 (제337회)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 
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황규철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5년 1월 19일

#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황규철 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5년 1월 19일

발 의 자 : 황규철·이양섭·김학철·김인수·

이의영·박우양·김봉희 의원(7명)

의안 번호	121
----------	-----

## 1. 제안 이유

- 2015년 1월 1일자로 ‘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’ 및 동  
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농업기술원의 부장 직위가 국장으로  
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, ‘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  
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’ 중 [별지 제1호 서식] 결재란의  
‘부장’ 을 ‘국장’ 으로 변경함은 물론 농정국의 농산지원과  
가 유기농산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- ‘기술지원부장’ ⇒ ‘기술지원국장’, ‘농산지원과장’ ⇒  
‘유기농산과장’ 으로 개정(안 제5조)
- ‘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’ 중  
[별지 제1호 서식] 결재란의 ‘부장’ 을 ‘국장’ 으로 변경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5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6. 관련부서 협의 : 농업기술원과 협의

## 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

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

##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중 “기술지원부장”을 “기술지원국장”으로, “농산지원과장”을 “유기농산과장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[별지 제1호 서식] 결재란의 “부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4조(생 략)</p> <p>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 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<u>기술지원부장</u>, <u>지원기획과장</u>, 충청북도 농정국 <u>농업정책과장</u>, <u>농산지원과장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1조 ~ 제4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기술지원국장</u>, ----- ----- <u>유기농산과장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 계 법 령

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[시행일 : 2015-01-01]

제21조(원장) 농업기술원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2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22조(하부조직) ① 농업기술원에 행정지원과, 연구개발국, 기술지원국을 둔다.

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,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, 감사시험장장은 지방농업사무관·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.